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과제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는 과제 선정 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선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을 통해 잔여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방식의 지원공고임

ex) 총 정부출연금이 6억원이고, 개발기간이 2년인 과제의 경우,
2021년 협약 시 1.5억원 지급, 4.5억원은 2023년 개발 종료 후 지급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과제종료 시 (최종평가 및 정산 후) | 총 지급액 |
|----------|------|------|-------------------------|-------|
| 지급금액(억원) | 1.5 | 미지급 | 4.5 | 6 |

<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안) >

- ① (기술료 면제)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 ② (보증연계) 기술보증 연계 지원 보증지원(최대 30억원)
- ③ (후속과제 연계지원)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사업에 즉시 연계
(예시)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 ④ 졸업제·동시수행 과제 대상에서 제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 * 분야 또는 품목 참고 : <참고1> 비대면 서비스 분야 및 예시
<참고2>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안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1차년도(협약 시)에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판정 시 잔여 75% 해당금액을 지급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연구개발비 |
|----------------|---------------|-----------|------------|-------------|--------------|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300 | 7.5 | 67.5 | 75 | 375 |
| 2차년도 | 300 | 7.5 | 67.5 | 75 | 375 |
| 합계 | 600 | 15 | 135 | 150 | 750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0 | - | - | 20.0 | 10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50백만원)의 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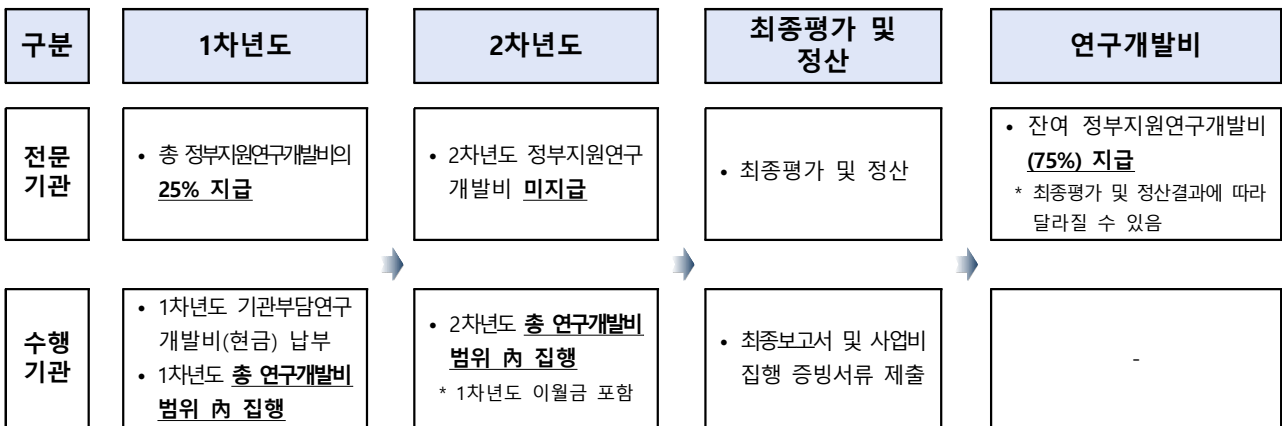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납부 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先 지급 후 75%(잔여사업비)를 과제 종료 후(최종평가 및 정산 후) 지급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비를 先집행하고 정산 결과를 근거로 기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지급

*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는 협약 시 납부하되, 2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2차년도 과제수행 중 선집행하고 과제종료 후 선집행 내역을 증빙

<후불형 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및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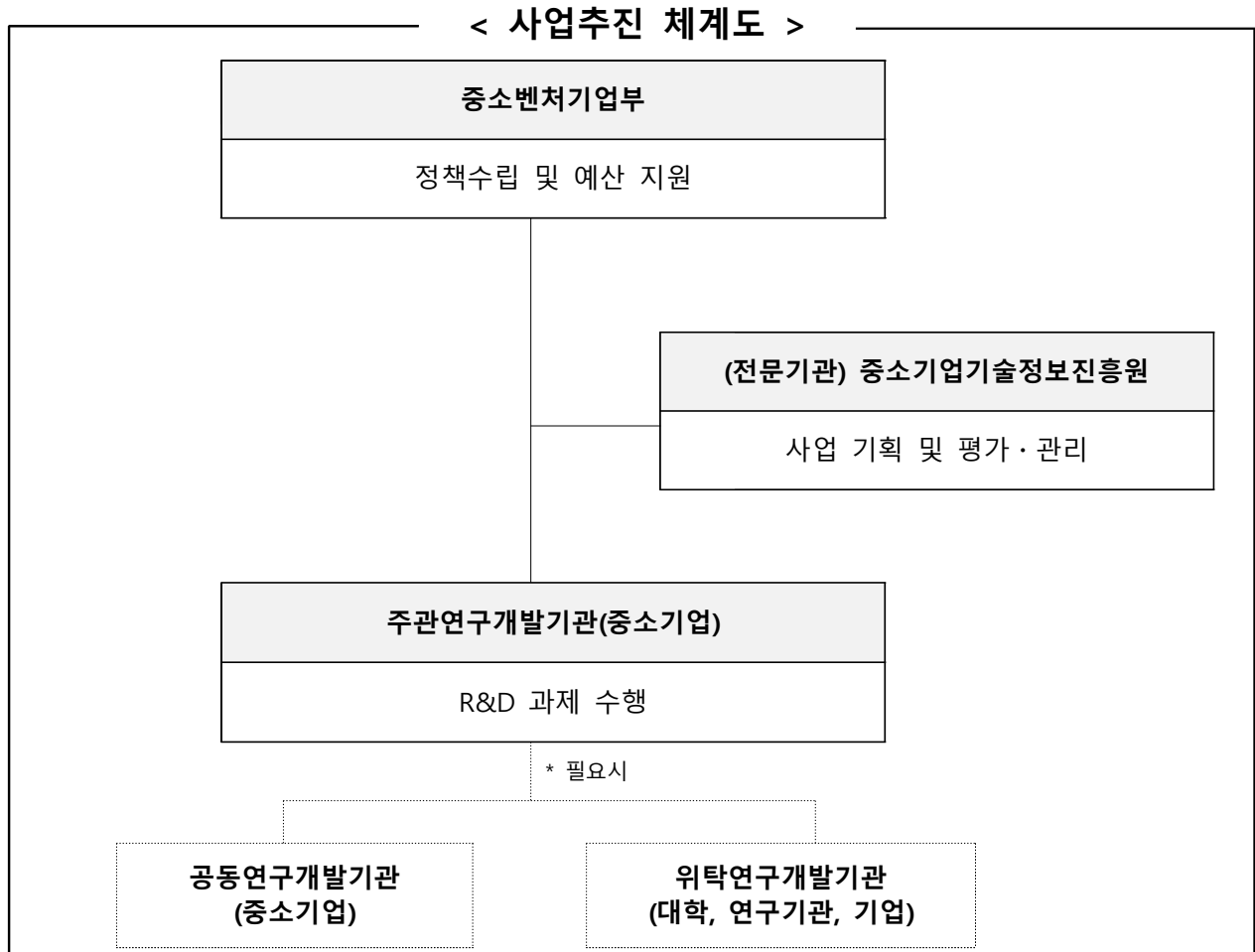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5억원(2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

|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
| 매출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BIG3) 「3대 신산업 분야」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4IR)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BIG3) 「3대 신산업 분야」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3대 신산업 분야

① 미래차 ② 시스템반도체, ③ 바이오헬스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비대면·서비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전략분야**

- 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교육, ③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④ 생활소비, ⑤ 엔터테인먼트, ⑥ 물류·유통, ⑦ 블록체인

- (4IR)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드론, ⑧ 지능형로봇, ⑨ 스마트 제조, ⑩ 시스템 반도체, ⑪ 스마트시티, ⑫ IoT, ⑬ 신재생에너지 ⑭ 이차전지 ⑮ 자율주행차, ⑯ 전기·수소차, ⑰ 바이오, ⑱ 의료기기, ⑲ 재난/안전, ⑳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 <참고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신청자격,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구 분 | 확인방법 |
|----------|---|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구 분 | 확인방법 |
|------|---|
| 참여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㉑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㉒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㉓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㉕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 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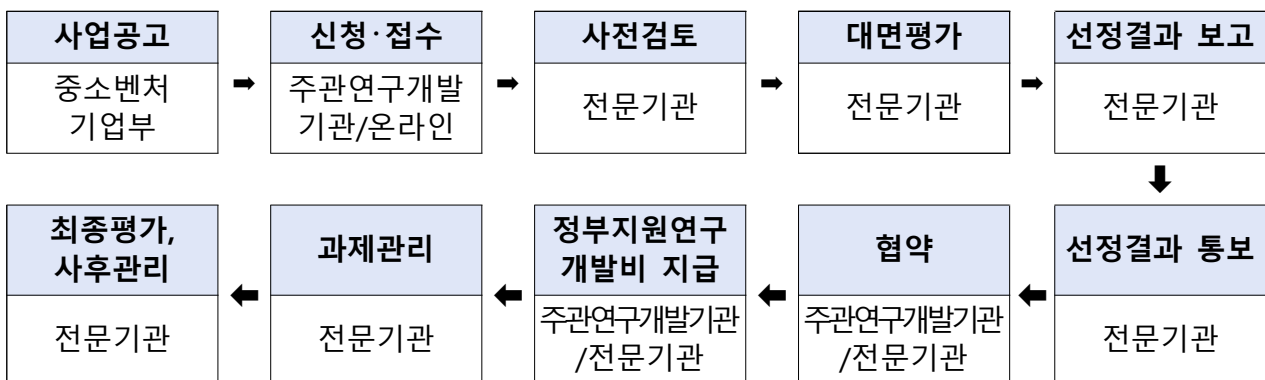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 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후 대면평가 진행

□ 사전검토(10월 예정)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 7쪽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참고

□ 대면평가(10월 예정)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대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지원과제 확정(10월 예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11월 예정)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5.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1. 9. 27(월) ~ '21. 10. 12(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화면상단)과제신청 →(좌측)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접수증 출력> |
| <p>① 1단계 : 회원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p>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p>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1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p>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 |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 |
| | | 본문2 | ○ |
| 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
| 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
| ⑥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 ○ | |
| 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 | ○ |
| ⑧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⑨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 ○ | |
| ⑩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
| ⑪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 |
| ⑫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 |
| ⑬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 |
| ⑭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 |
| ⑮ | 과제 종료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분할 지급 동의서 | ○ | |
| ⑯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 ○ |

* ⑥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의 예상 매출액 확인용으로 실제 부과되는 기술료 없음

6. 기타사항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계상한도)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 현금 연구개발비가 1억원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가능한 인건비는 5천만원 이내
 -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 예시)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액 |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
|-------------------|--------------|---------------------|
| 4억원 이상 | 4억원 당 1인 |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
| 4억원 미만 | 해당없음 |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 청년인력이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 사업 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협약 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현금부담금 조정

□ (선택) 과제 선정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 지원

- (지원대상) “시장확대형(후불형)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특허환경 분석, IP 포트폴리오 수립, IP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 지식재산 IP 전략 수립지원 세부내용은 <참고4>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7. 유의사항

- ①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②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③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 개발과제**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삭감

⑤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㉓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⑥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기술료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기술료 납부 면제 적용

9.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44-201-0004 044-201-0007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 1

비대면 · 서비스 분야 및 예시

| 구분 | 세부분야(예시) | 세부기술(예시) |
|------------------|--------------------------|---|
| 1. 스마트 헬스케어 | 진단·재활용 웨어러블 | 손목시계형 혈압기,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
| | 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 AI기반 의료영상진단기, 원격의료 시스템, 병원예약, 원격 심리상담 |
| 2. 교육 | 온라인 교육시스템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교육용 네트워크 플랫폼, 강이자-사용자 매칭형 교육 플랫폼 |
| | 온라인 교육콘텐츠 | 교육용 전자책, 온라인 강의, 유튜브 키즈강의 제작 |
| 3.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 원격근무, 화상시스템 | 영상회의 플랫폼, 협업툴(SaaS) |
| | 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 AI활용 맞춤형 추천, 온라인 홍보, 챗봇, 콜센터 시스템 |
| | 스마트 금융 | P2P 대출, 가상화폐 중개, 해외송금, 결제대행, 로보어드바이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
| 4. 생활소비 | 온라인 소비자(식품 등) 제조판매 | 반조리 식품, 밀키트 등 식품 제조하여 배송, 온라인 판매 또는 온라인 입점 |
| | O2O 생활중개 플랫폼 | 배달앱, 일자리 중개, 가사서비스 중개, 부동산 중개, 중고거래 중개 등 |
| | 스마트 상점 | 매장 고객관리, 무인스토어 앱, 자판기 |
| | 전자상거래 | 공산품, 신제품 판매, 신선식품 유통·판매 |
| 5. 엔터테인먼트 | 게임 | 게임, e스포츠, 게임 유통·마케팅 |
| | 콘텐츠 | MCN 콘텐츠, 연예인 매니지먼트, 공연·영화·드라마·애니·음반 기획 및 제작, 도서제공 플랫폼,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오디오 스트리밍, OTT, 웹툰, 웹소설 등 |
| | SNS 등 소통 | 대화형·게시형 SNS |
| | 여행·숙박·장거리이동 | 여행, 숙박예약, 렌터카 등 |
| 6. 물류·유통 |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 물류관리 플랫폼, 커머스 배송대행, 물류 효율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등 |
| | 드론·무인기, 자율차 | 드론 제작, 드론 운영프로그램, 자율차 프로그램 |
| 7. 블록체인 | 분산ID 및 인증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거래내역 추적 기술 등 |
| |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 실물/디지털 정보 매핑 기술, 부정거래 탐지 기술, 불법취득 자산 탐지 기술 등 |
| | 서비스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시스템 | Secure Environment 관련 기술, 키 관리 기술(KMS), 전자지갑 기술, 블록체인 암호키 복구 기술 등 |
| | 불법 거래 탐지시스템 | 비정상거래 탐지 및 차단 기술, 거래 데이터 판독 시스템 등 |
| | 공유 경제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서비스 기술, 분산 공유 플랫폼 등 |
| |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 저작권 도용방지 기술 및 해킹 방지 기술, 블록체인 기반 지갑 관리 기술 등 |

참고 2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안내

□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품목 현황

○ 20대 분야, 138개 품목

| 구분 | 순번 | '19년 전략분야 | 전략품목 수 | 순번 | '20년 전략분야 | 전략품목 수 | |
|------------------|----|-----------|------------|-----------|-----------|-----------------|---|
| 4차 산업혁명 분야 | 1 | 인공지능 | 6 | 1 | 인공지능 | 8 | |
| | 2 | 빅데이터 | 6 | 2 | 빅데이터 | 6 | |
| | 3 | 5G+ | 5 | 3 | 5G+ | 5 | |
| | 4 | 블록체인 | 6 | 4 | 블록체인 | 6 | |
| | 5 | 서비스 플랫폼 | 8 | 5 | 서비스 플랫폼 | 8 | |
| | 6 | 실감형 콘텐츠 | 8 | 6 | 실감형 콘텐츠 | 6 | |
| | 7 | 드론 | 3 | 7 | 드론 | 4 | |
| | 8 | 지능형 로봇 | 5 | 8 | 지능형 로봇 | 7 | |
| | 9 | 스마트 제조 | 21 | 9 | 스마트 제조 | 16 | |
| | 10 | 시스템 반도체 | 9 | 10 | 시스템 반도체 | 8 | |
| | 11 | 스마트시티 | 9 | 11 | 스마트시티 | 7 | |
| | 12 | IOT | 8 | 12 | IOT | 6 | |
| | 13 | 신재생에너지 | 9 | 13 | 신재생에너지 | 8 | |
| | 14 | 배터리 | 5 | 14 | 이차전지 | 5 | |
| | 15 | 미래자동차 | 9 | 15 | 자율주행차 | 6 | |
| | | | | 16 | 전기·수소차 | 7 | |
| | 16 | 바이오헬스 | 8 | 17 | 바이오 | 6 | |
| | | | | 18 | 의료기기 | 6 | |
| | X | | | | 19 | 재난/안전 | 7 |
| | | | | | 20 |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 6 |
| 소계 | | | 125 | 소계 | | 138 | |

□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품목 세부현황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분야, 138개)

| 전략분야 | 전략품목 | 전략분야 | 전략품목 |
|--------------------|--|--------------------|---|
| 인공지능 (8개) | AI 기반 교육서비스 AutoML 솔루션 합성 데이터 (Synthetic Data) eXplainable AI(XAI)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Robotics Process Automation(RPA) System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 지능형 로봇 (7개) | 물류 배송 지능형로봇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 지원 로봇 배달 및 안내 서비스 로봇 체험형 시뮬레이터 로봇 살균/방역 지능형로봇 커뮤니케이션 돌봄 로봇 수술용 의료 로봇 |
| 빅 데이터 (6개) |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위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 스마트 제조 (16개) | 중소기업용 스마트 제조 플랫폼 스마트 제조용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APS) HyperConnected(초연결) 스마트 제조용 보안시스템 스마트 설비 관리 시스템 중소기업용 On-Site 엣지 시스템 자율형 공정 제어 솔루션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스마트 제조용 웨어러블 기기 IoT 융합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산업용 지능형 센서 무인반송차(AGV)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 보급형 스마트팜 솔루션 스마트 축산 솔루션 |
| 5G+ (5개) | 비대면 응용 서비스를 위한 5G 기반 통신 시스템 B2B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대역 활용 시스템 5G 무선통신 테스트 및 계측 장비 5G 기반의 스포츠 및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 | 자율 주행차 (6개) |
| 블록 체인 (6개)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소비자 이력 관리 시스템 암호 자산 기반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 시스템 반도체 (8개) | 자율주행차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헬스케어 기기용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용 반도체 의료기기용 시스템반도체 오디오 시스템 반도체 무선 충전 IC 및 모듈 전력(파워)반도체 (Power IC) 보안 솔루션 (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
| 서비스 플랫폼 (8개) | 비대면 교육 플랫폼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O2O 서비스 플랫폼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 | 재난/ 안전 (7개) |
| 실감형 콘텐츠 (6개) | 실시간 인터랙션 콘텐츠 영상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저작도구 모션처리 미들웨어 입출력 처리 미들웨어 데이터 스트리밍 미들웨어 | 드론 (4개) | 운송/배달 드론 재난 모니터링 드론 시설물 안전 점검용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

| 전략분야 | 전략품목 |
|-------------|---|
| 스마트 시티 (7개) |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정보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시스템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에너지 최적화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터(AMI) |
| IOT (6개) | IoT용 스마트센서 홈 IoT 헬스케어 가전 스마트 홈 방범시스템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홈 IoT 반려동물 케어장치 스마트 홈 위험상황 대응 시스템 |
| 바이오 (6개) | 단백질 의약품 세포 및 조직 치료제 생체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분자/면역 진단키트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기능성 화장품 |
| 의료 기기 (6개) |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뷰티케어 디바이스 치과용 진단 시스템 ICT 기반 지능형 영상진단 시스템 |

| 전략분야 | 전략품목 |
|------------------|--|
| 전기·수소차 (7개) | 전력공급 및 저장시스템 인휠 모터 시스템 전장시스템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소차 부품 국산화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
| 신재생에너지 (8개) |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수소충전용 충전비 및 부품 시스템 수소액화 저장 시스템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시스템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지열 에너지화 활용 냉난방 시스템 |
| 이차전지 (5개) |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
| 친환경 및 소재 순환 (6개) | 바이오매스 연료화 폐기물 고형연료화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 기술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화 친환경 합성섬유(바이오매스, 리사이클, 생분해성 섬유) |

* 품목별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 연번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
| ①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5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②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 3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③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 3점 | 아기유니콘 인증서 |
| ④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 최대 2점 |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
| 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⑥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 ⑦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⑧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 2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평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
| ⑨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
| ⑪ |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⑫ |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 1점 |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 연번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
| ⑬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1점 |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
| ⑭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 2점 |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
|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 1점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 ⑮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1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 ⑯ |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 2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 ⑰ |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 |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 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2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 ⑲ |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 3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⑳ |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 2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 |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3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 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2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1점 | |

참고 4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개요**

○ (지원개요)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비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액 현금으로 부담(연구비 중 R&D 연구활동비)

| 구분 | IP 전략 수립지원 |
|----------------|--|
| 지원 비용 (R&D 예산) | 3,000만원(부가세 별도) |
| 지원 기간 | R&D 기간 내 약 2.5개월 지원 |
| 지원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핵심 기술 특허 DB 확보 • 수출 시장 중심의 선진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 및 특허 권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R&D 결과물에 대한 경쟁사 특허 비침해 논리 개발 - 경쟁사 특허의 흠결이나 약점(선행 문헌 존재, 특허 명세서, 절차 오류 등)을 추적하여 핵심 특허를 없애는 무효화 논리 개발 -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변경을 최소화하여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 마련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보유 특허 보강 및 신규 특허 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유 IP를 분석하여 권리 범위 구체화, 확장 등 보강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경쟁사들의 모방품이 그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한 IP 창출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인력의 IP 역량 강화 교육 등 IP 인프라 지원 |

□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

| 지원 전 | 지원 후 |
|----------------------|---|
| 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 | R&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
|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 |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
| R&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 | R&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 |
| R&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 | R&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 |
| 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 | 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 |
| 해외 특허 보유 미흡 | 해외 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지원되는 IP 전략 수립지원 내용(IP Needs)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절차>

|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
| R&D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 IP 전략 수립지원 설명회 | 권역별 설명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 전략 수립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 IP 역량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
|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 |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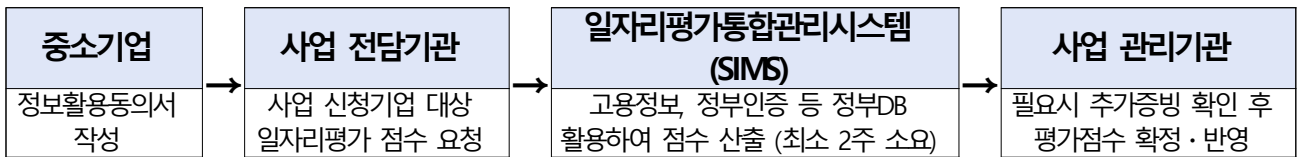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5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3.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I. 일자리 양 | 고용증가 |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70 |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
| II. 일자리 질 | 성과공유 |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 3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III. 고용질서 준수 | 법령준수 |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20 | |
| IV. 가점 | 근로환경 | 가. 근로시간 단축 (+10)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안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 1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합 계 | | | -10~100 | 가점포함 최대점수 100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 평가항목 | 내용 및 문의처 |
|------------------|--|
| 미래성과공유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
| 성과급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 임금수준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 우리사주제도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
|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 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 내일채움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
| 근로시간 단축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 정주여건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

| | |
|-------------------------|--|
| 가족친화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
| 청년친화강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
| 노사문화우수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
| 현장실습 선도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02-6050-3455) |
| 존경받는기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 |